

지역차별의 '교범' 〈훈요십조〉의 위작

위서의 사회사 — 6

김삼웅 | 〈대한매일〉 주필

지역차별의 '교범' 이 태조 왕건의 〈훈요십조〉는 대표적인 위서 가운데 하나다. 호남차별의 근거가 된 〈훈요〉 제8조는 경주 출신인 최 항이 백제계의 부상을 막기 위해 신라계인 최제안을 끌어들이려 조작했다. 하지만 태조 왕건이나 후계자들은 지역차별보다는 오히려 지역포용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쳤다. 따라서 〈훈요십조〉는 군주의 유훈이라도 신하들에 의해 조작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역사의 물굽이를 바꾸고 지금까지도 크게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위서 가운데 하나는 고려 태조 왕건의 유훈이라는 〈훈요십조〉를 들 수 있다.

〈훈요십조〉가 사그라질 줄 모르는 지역차별의 '교범' 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날조의 사실이 더러 지적되고 있는데도 왕건의 〈훈요십조〉는 역사 교과서에 버젓이 실리고 학생들은 충실하게 이를 배우고 있다.

그렇다면 〈훈요십조〉가 어떻게 조작됐는지 알아보자. 태조 왕건은 942년(태조 25년)에 자손들을 훈계하기 위해 몸소 10가지 유훈을 남긴 것으로 알려진다. 태조는 임종하기 1개월 전에 대광(大匡) 박술희를 내전으로 불러 친히 10가지 유훈을 전했다. 그 전문이 《고려사》(태조세기 26년 4월조)에 있다. 《고려사절요》에도 전한다.

인재등용의 차별 밝힌 조문으로 와전돼

〈훈요십조〉는 크게 두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앞부분은 서론격인 〈신서(信書)〉며 뒷부분은 본론격인 10조의 〈훈요(訓要)〉다.

〈신서〉는 “내 듣건대 순(舜)은 역산(曆山)에서 밭을 갈다가 요(堯)의 양위를 받았고, 한(漢) 고조는 패택(沛澤)에서 일어나 드디어 한의 왕업을 이루었다. 나도 평범한 집안에서 일어나 잘못 추대되어, 더위와 추위를 무릅쓰고 마음과 몸을 몹시 고달프게 해가면서 19년 만에 삼한을 통일하고, 즉위 25년(〈훈요〉를 친술한 해)에 몸은 이미 늙었다. 행여나 후세들이 방탕하여 기강을 문란하게 할까 두려워 〈훈요〉를 지어 전하니 조석으로 읽어 길이 귀감으로 삼으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훈요〉의 내용 가운데 문제는 제8조다. “차현(車峴) 이남, 공주강(금강) 밖의 산형 지세가 모두 본주(本主)를 배역(背逆 : 금강 유역에 남에서 북으로 역류함을 의미)하여 인심도 또한 그러하니, 저 아랫녘의 백성이 조정에 참여하여 왕후, 국척(國戚)과 혼인을

맺고 정권을 잡으면 혹 나라를 어지럽히거나, 혹 통합(후백제의 합병)의 원한을 품고 반역을 감행할 것이다. 또 일찍이 관노비나 진역(津驛)의 잡역에 속하였던 자가 혹 왕후, 궁원에 붙어서 간교한 말을 하여 권세를 잡고 정세를 문란하게 하여 재변을 일으키는 자가 있을 것이니, 비록 양민이라도 벼슬자리에 있어 봉사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었다.

여기서 지적한 '차현' 은 충남 천안에서 공주로 가는 중간 차령 산맥을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충청도 일부 지역과 호남지역을 가리켜 산형지세가 거꾸로 거슬러 달리니 인심도 그럴 것이므로 인재를 등용하지 말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산수 배역론(背逆論)의 도참설을 들어 인재등용을 차별하는 것이다. 이 한마디가 후대에 윤색·와전되고, 전라도 지역으로 축소되면서 호남차별의 역사적인 '전교'(典敎)처럼 되고 말았다.

신라 기득권층의 위기의식 반영돼

〈훈요〉의 제8조가 위작됐다는 주장은 오래 전부터 나왔다. 이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한 사람은 일본 역사학자 이마니시(今西龍)다. 그는 〈훈요〉의 제2조와 8조가 위작됐을 것으로 분석했다. 제2조는 함부로 사찰을 짓지 말라는 내용이다.

〈훈요〉는 왕건이 죽은 뒤 즉각 공개되지 않고 최 항(崔沆)의 집에 소장돼 있던 것을 뒤늦게 발견했다. 《고려사》에는 “처음 태조의 신서 유훈을 잃었는데 최제안(崔齊顔)이 최 항의 집에서 얻어 간직하여 두었다가 바치니 이로 인하여 세상에 전하게 되었다”고 했다. 그 시비곡절을 살펴보자.

최 항은 목종(7대) 임금 때인 1009년 〈훈요〉를 받아 집에 보관하게 된다. 그 이듬해 거란의 제2차 침입을 받게 되고 8대 현종은 나주로 피난 갔다가 돌아온다. 그리하여 현종은 1013년에 최 항 등에게 국사편찬을 지시한다. 1024년 최 항이 죽었다. 이때까지 최 항은

〈훈요〉에 관한 이야기를 현종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국사편찬 때도 이를 활용하지 않았다.

역사학자 이병도는 경주 출신인 최 향이 〈훈요〉 제2조의 사찰 신축을 금지한 것과 경주보다 서경(평양)을 중시하는 내용이 못마땅해 이를 현종에게 바치지 않았을 것으로 분석했다. 비슷한 이유로 최 향은 백제 출신이 중앙정계에 진출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 이를 위작했을 듯하다.

왕건의 삼한 통일로 경주지역의 신라 기득권층은 심각한 위기의식에 빠지게 됐다. 1천여년 동안 누려온 기득권이 일순에 무너지는 위기감이었다. 그들에게는 왕조의 붕괴나 몰락보다 자신들의 기득권 상실이 더 견디기 어려운 일이었다. 더욱이 왕건의 삼한통일로 자신들과 종속적 관계이던 백제 유민들의 부상은 용납하기 어려운 도전으로 인식됐다.

백제계에 대한 편견 퍼뜨릴 목적으로 조작해

평소 백제계의 진출을 못마땅하게 여긴 최 향이 목종에게 받은 〈훈요〉는, 누구도 본 사람이 없고 내용도 알려지지 않았다. 〈훈요〉를 최 향에게 맡긴 목종은 곧 죽었고 새 임금 현종은 이런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 최 향이 내놓지 않으면 영원히 찾지 못할 상태였다. 따라서 최 향이 이를 변조한다고 해서 의심받을 상황도 아니었다.

태조에게 〈훈요〉를 받아 쓴 박솔희는 이미 죽어서 그의 필체를 모사해 개작한다면 누구도 이를 의심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해 최 향은 〈훈요〉를 변조해 자기 집에 숨겨뒀다. 그리고 신라계인 최제안을 끌어들이 자기가 죽은 뒤 적당한 시기에 자기 서재를 뒤져 사료를 찾는 과정에서 이 〈훈요〉를 찾아내 임금에게 바치도록 했다. 그러면 어느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최 향이 〈훈요〉를 변조하지 않았다면, 자기를 그토록 신임하고 국사편찬의 책임을 맡겼던 현종에게 〈훈요〉를 바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최 향은 만에 하나라도 변조의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돌이키기 어려운 화를 입을 것이기에 최제안을 끌어들이 우연히 이를 발견한 것처럼 치밀하게 조작한 것이다.

〈훈요〉가 발견된 시점이 백제계가 과거시험 등을 통해 중앙정계에 등장하고 있던 때와 일치

한 데서도 최 향의 조작설은 더욱 그럴 듯하다. 따라서 〈훈요〉 제8조는 “왕건의 뜻에 가탁하고 풍수지리설을 이용하여 백제계에 대한 편견을 조야에 퍼뜨릴 목적으로 지어낸 조작”(남영신)이라는 사실에 주목하게 된다. 신라계의 소수 기득권층이 통일신라 시대에 확보했던 패권주의를 고려 시대에 변형시켜 시도했던 것으로 새로운 지역패권주의적 행태라는 분석이다.

지역 차별보다 포용정책 펼친 왕건

위작설의 상황설명에 이어 구체적 논거를 살펴보자. 첫째, 왕건의 인격설이다. 왕건은 중국 한 고조에 비유될 만큼 겸허한 인품과 폭넓은 아량으로 후백제 견훤과 신라 경순왕을 포용해 삼한 통일의 위업을 달성했다. 그런 사람이 특정 지역 차별정책을 후손에게 유훈으로 전했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다.

둘째, 왕건은 후계자를 나주 태생으로 책봉했다. 왕건의 뒤를 이어 등극한 제2대 임금은 혜종이다. 혜종은 왕건이 나주에서 후백제군과 싸울 때 얻은 아들이다. 그리고 혜종을 낳은 장화왕후는 나주현(목포) 출신이다. 상식적으로 금강 바깥 출신을 왕후로 맞고 그 소생을 세자로 책봉한 왕건이 그 지역을 배척하는 훈계를 남길 수 있겠는가.

셋째, 나주 지역은 왕건에게 특별한 곳이다. 왕건은 임금으로 추대되기 전에 궁예의 장수로 서영산강 유역을 경략했다. 나주를 점령하고 이를 방어하는 데 이 지역 사람들의 헌신적인 도움을 받았으며, 이 시기에 이 지역 사람 가운데 유능한 사람들과 접촉해 크게 증용했다.

넷째, 호남출신을 측근으로 증용했다. 왕건의 생명을 구하고 전사한 곡성 출신 신승경을 비롯, 그림자처럼 수행하면서 창업을 도운 영암 출신의 최지몽, 후백제 정벌에 크게 기여한 순천 출신의 박영제, 왕건이 국사로 모신 승려 도선(道詵) 등이 모두 이 지역 출신이다. 혜종 또한 즉위한 후에 나주 출신 무사들을 경호원으로 삼았다.

다섯째, 과거제를 실시하면서 특정 지역을 배제하지 않았다. 고려는 958년(광종 9)에 후주(後周)에서 귀화한 쌍기의 건의에 따라 실시한 과거시험에서 특정지역 출신을 전혀 배제하지 않았다. 광종이 선왕의 〈훈요〉 제8조를 알고 있었

다면 있기 어려운 일이다.

여섯째, 제2차 거란의 침입을 받았을 때 현종은 개성을 떠나 나주로 파천하게 된다. 〈훈요〉 제8조와 같은 배역론이 이미 현종에게 전달됐다면 신변이 위중한 시기에 하필이면 나주로 파천할 수 있겠는가.

일곱째, 왕건은 창업을 전후해 ‘훈인동맹’의 정책을 써서 지방 호족들을 측근으로 삼았다. 20여명에 달하는 후비의 출신 지역이 매우 다양해 한반도 전역을 망라했다. 이처럼 지역화합에 앞장선 인물이 특정지역 배척론을 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통하지 않는다.

여덟째, 실제 중앙정계의 인재를 등용할 때 차현 이남 출신을 차별하지 않았다. 태조 때부터 인종 초기까지 차현 이남 출신으로 고위관직에 등용된 사람은 21명이다. 그 가운데 과거급제자는 10명, 재상(2품 이상)을 지낸 사람은 12명, 수상(내사령, 문하시중)에 오른 사람은 3명이다. 이것은 곧 태조 이후 차현 이남 출신도 능력에 따라 얼마든지 증용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왕건의 〈훈요십조〉 제8항은 위작됐음을 입증할 수 있다. ●